

소득확인증명서(청년도약계좌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)

※ []에는 해당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발급번호	처리기간	즉시
------	------	----

소득자	성명	생년월일
	주소	

(단위 : 원)

[]근로소득자용 [총급여액이 7천5백만원 이하인 사람만 비과세 적용 가능, 근로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「종합소득세 신고(결정·경정)자용」의 종합소득금액으로 판단]

귀속연도	소득구분	원천징수의무자		총급여(과세대상급여)액
		법인명(상 호)	사업자등록번호	

[]종합소득세 신고(결정·경정)자용 (종합소득금액이 6천3백만원 이하인 사람만 비과세 적용 가능,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「근로소득자용」의 총급여액으로 판단)

귀속연도	종합(결정) 소득금액	근로소득 유·무		근로소득 외의 소득 유·무	
		[]유	[]무	[]유	[]무
		[]유	[]무	[]유	[]무
		[]유	[]무	[]유	[]무
		[]유	[]무	[]유	[]무

[]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·연금 소득자·종교인소득자용 [사업소득·연금소득·종교인소득금액이 6천3백만원 이하인 사람만 비과세 적용 가능, 연말정산한 사업소득·연금소득·종교인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「종합소득세 신고(결정·경정)자용」의 종합소득금액으로 판단]

귀속연도	소득구분	원천징수의무자		사업·연금·종교인소득금액 (해당 연도 소득금액)
		법인명(상 호)	사업자등록번호	

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93조의8제5항에 따라 총급여액, 종합소득금액 또는 연말정산한 사업·연금·종교인소득금액을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위와 같이 소득확인증명서 발급일 현재 청년도약계좌 소득요건(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91조의22제1항)을 ([] 충족, [] 미충족)함을 증명합니다.

다만, 매년 6월 30일 이전에 전전년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경우 또는 본 증명서 발급 이후 경정·결정, 수정신고 등의 사유로 총급여액 등이 변경되는 경우 등에는 국세청장이 가입일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등을 확인하여 금융회사등에 통보하며,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통보받는 경우 그 통보된 청년도약계좌에서 가입 시부터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.

년 월 일

세무서장 직인

유의사항

-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소득자 또는 근로소득과 그 외의 소득이 있는 사람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 「종합소득세 신고(결정·경정)자용」과 「근로소득자용」을 모두 기재합니다.
- 연말정산한 사업소득·연금소득·종교인소득만 있는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·연금소득자·종교인소득자 또는 연말정산한 사업소득·연금소득·종교인소득과 그 외의 소득이 있는 사람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 「종합소득세 신고(결정·경정)자용」과 「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·연금소득자·종교인소득자용」을 모두 기재합니다.
- 근로소득자용의 총급여(과세대상급여)액란은 외국인단일세율 적용 시에는 연간 근로소득이 표시되며, 일용근로소득자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「소득세법」 제164조에 따라 제출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총지급액(과세소득)을 기재합니다.
- 종합소득세 신고(결정·경정)자용의 종합소득금액(결정소득금액)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을 기재합니다.
- 증명신청일이 6월 30일 이전인 경우에는 신청일의 전전년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, 종합소득금액 또는 연말정산한 사업·연금·종교인소득금액부터 기재하고, 7월 1일 이후인 경우에는 신청일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, 종합소득금액 또는 연말정산한 사업·연금·종교인소득금액부터 기재합니다.